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12.3.(금)10:00]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안 1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복지교육국)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박춘주 〉

1. 안 건 명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생활보장과)

2. 안건번호

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 제21-122호

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21-123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16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가.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7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I

예산규모

1 2022년도 “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안(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률
합 계	763,613,887	735,557,403	28,056,484	3.81%
일 반 회 계	707,458,921	651,363,390	56,095,531	8.61%
특 별 회 계	56,154,966	84,194,013	△28,039,047	△33.30%

2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액	증 감 률
세입 총계	282,412,896	262,913,927	19,498,969	7.42%
세외수입	1,835,880	1,482,493	353,387	23.84%
경상적세외수입	1,538,920	1,175,483	363,437	30.92%
재산임대수입	475,674	403,971	71,703	17.75%
사용료수입	1,051,622	747,342	304,280	40.71%
수수료수입	11,624	24,170	△12,546	△51.91%
임시적세외수입	44,520	42,010	2,510	5.97%
기타수입	44,520	42,010	2,510	5.9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2,440	265,000	△12,560	△4.74%
과징금	2,440	5,000	△2,560	△51.20%
과태료	250,000	260,000	△10,000	△3.85%
보조금	280,577,016	261,431,434	19,145,582	7.32%
국고보조금등	167,325,702	148,511,719	18,813,983	12.67%
국고보조금등	167,325,702	148,511,719	18,813,983	12.67%
시·도비보조금등	113,251,314	112,919,715	331,599	0.29%
시·도비보조금등	113,251,314	112,919,715	331,599	0.29%

○ 검토결과: 복지교육국 세입 예산안은 마포구 전체 세입·예산안의 36.98%로, 주요 세입으로는 서울시나 국가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7.42% 증가하였음

□ **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률
합 계	375,546,313	355,264,519	20,281,794	5.71%
복 지 정 책 과	15,601,619	14,478,526	1,123,093	7.76%
생 활 보 장 과	55,830,720	48,590,339	7,240,381	14.90%
노 인 장 애 인 과	155,047,717	151,497,406	3,550,311	2.34%
여 성 가 족 과	100,525,526	97,154,225	3,371,301	3.47%
아 동 청 년 과	28,736,915	25,635,761	3,101,154	12.10%
교 육 지 원 과	13,536,132	11,970,441	1,565,691	13.08%
마포중앙도서관	6,267,684	5,937,821	329,863	5.56%

○ 검토결과: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은 **마포구 전체 세출 예산안의 49.18%**이며, 각종 복지서비스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5.71% 증가하였음

3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률
복지교육국	374,941,823	354,779,319	20,162,504	5.68%
복지정책과	15,601,619	14,478,526	1,123,093	7.76%
생활보장과	55,283,430	48,105,139	7,178,291	14.92%
노인장애인과	155,047,717	151,497,406	3,550,311	2.34%
여성가족과	100,525,526	97,154,225	3,371,301	3.47%
아동청년과	28,736,915	25,635,761	3,101,154	12.10%
교육지원과	13,536,132	11,970,441	1,565,691	13.08%
마포중앙도서관	6,210,484	5,937,821	272,663	4.59%

○ 검토결과: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8%가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53%**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가 복지교육국 예산안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음.

4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률
합 계	604,490	485,200	119,290	24.59%
복 지 정 책 과	-	-	-	
생 활 보 장 과	547,290	485,200	62,090	
노 인 장 애 인 과	-	-	-	
여 성 가 족 과	-	-	-	
아 동 청 년 과	-	-	-	
교 육 지 원 과	-	-	-	
마포중앙도서관	57,200	-	57,200	

- 검토결과: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등 총 2개이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59%가 증가하였음.

5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①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 입 ②	지 출 ③		
총 계	9,383,834	573,460	3,998,764	5,958,530	△3,425,304
자활기금	1,692,412	43,250	92,084	1,643,578	△48,834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 금	4,199,174	469,654	3,846,260	822,568	△3,376,606
노인복지 기 금	1,329,914	20,556	20,420	1,330,050	136
양성평등 기 금	2,162,334	40,000	40,000	2,162,334	0

- 검토결과: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총 4개이며, 전년도 대비 34억 2,530만 4천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2022년 기금 편성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생활 보장과의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 전체의 44.75%를 차지하고 있음.

II

복지교육국 “부서별” 2022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

1

복지정책과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륜
복 지 정 책 과	15,601,619	14,478,526	1,123,093	7.76%

- 검토결과: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복지교육국 예산의 4.16%로 다른 부서에 비해 비율이 적은 편이나 전년도 144억 7,852만 6천원보다 7.76%가 증가한 156억 161만 9천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 고
		2022년	2021년	증(△)감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p332)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3,500,000	0	3,500,000	국·시·구비 순증
2	복지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p334)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연구용역비)	50,000	0	50,000	순증
3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p335) -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등(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480	0	44,480	국·시·구비 순증
4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p339) -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50,000	0	50,000	국·구비 순증
5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p339) - 복지재단 기본재산·보통재산 출연금(출연금)	1,499,181	0	1,499,181	순증
6	재해구호 추진(p347)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분(사무관리비)	2,700	0	2,700	순증
7	우리동네돌봄단 운영(p347) - 운영용품 구매 직무교육 운영비 상해보험료 간담회비 등	5,125	0	5,125	순증
8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p348) - 회의수당, 심의수당(1,386천원) - 케어안심주택설치운영 간담회(350천원) - 인건비, 커뮤니티근로생활시설운영비 등(75,506천원)	77,242	0	77,242	순증

○ 예산증감 주요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	
1	긴급복지지원(p331) - 생계·주거·의료 지원 등(사회보장적수혜금)	1,211,000	1,100,824	110,176	국시 구비 매칭
2	사회복무제도지원(p334) - 봉급, 피복비, 여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	1,494,419	1,400,121	94,298	증액
3	사회복지전담 사회복지요원 운영(p334) - 사회복지요원 중식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9,750	267,624	42,126	시비 구비 매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p340) - 전담인력 인건비, 실무분과 공동사업 지원 등(민간이전)	111,378	100,899	10,479	시비 구비 매칭
5	동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p342) - 동복지대학·이웃살피미 운영 지원(행사운영비)	22,800	7,500	15,300	증액
6	동 복지기능 강화(p344) - 교육 강사료, 방문전용 휴대전화 요금 등(일반운영비)	25,960	40,062	△14,102	감액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p344) - 성산·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민간이전)	3,371,219	2,675,790	695,429	시비 구비 매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p345) -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위탁(전출금)	675,199	356,393	318,806	증액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p345)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민간자본이전)	73,230	496,992	△423,762	시비 구비 매칭
10	푸드마켓(뱅크)운영 지원(p345) - 마켓 인건비, 운영비 등(민간이전)	350,462	317,590	32,872	시비 구비 매칭
11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p346) -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민간이전)	117,103	149,121	△32,018	감액
12	보훈대상자 지원(p349) - 독립유공자보훈단체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등(일반보조금)	1,470,900	1,257,500	213,400	증액
13	보훈단체 지원(p351) - 보훈 9개단체 지회운영비 지원(민간이전)	59,400	25,800	33,600	증액

○ 명시이월 대상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2021 예산액	2022 명시이월액	비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이주및재해 보상금	63,526,197	8,787,000	

- 검토결과: 코로나19 관련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기한(2021.12.31.) 이후 신용·체크카드사와의 최종 정산을 위해 미집행액 명시이월

○ 검토 종합의견: 복지정책과는 우리구 복지행정의 주무 부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022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이전재원 지출이 많은 만큼 단체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기 지원 단체라도 사업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 후 성과에 따라 지원축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보장과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 감 륜
생 활 보 장 과	55,283,430	48,105,139	7,178,291	14.92%

- 검토결과: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교육국 예산의 14.74%인 552억 8,343만원으로 전년도 481억 513만 9천원보다 14.92% 증가하였음.

○ “자활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d = a + b - c)	증 감 (e = d - a)
		수 입 (b)	지 출 (c)		
자활기금	1,692,412	43,250	92,084	1,643,578	△48,834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199,174	469,654	3,846,260	822,568	△3,376,606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국 비	시 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부문	50%	50%	547,290	485,200	62,090	12.8%
국민기초생활보장	50%	50%	475,290	414,000	61,290	14.8%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	50%	475,290	414,000	61,290	14.8%
행정운영경비	50%	50%	72,000	71,200	800	1.12%
의료급여 관리자 인력운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	50%	72,000	71,200	800	1.12%

- 검토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예산증감 주요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	
1	생계급여(p355) - e그린 우편발송(공공운영비)	47,311	34,720	12,591	증액
2	생계급여(p356) - 생계급여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29,678,465	26,608,614	3,069,851	국시 구비 매칭
3	주거급여지원(p356) - 임대수급자기초주거급여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8,638,000	15,111,087	3,526,913	국시 구비 매칭
4	주거급여지원(p357) - 자가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600	68,913	15,687	국시 구비 매칭
5	해산장제급여(p357) - 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170,817	159,037	11,780	국시 구비 매칭
6	저소득주민 위문사업(p358) - 저소득주민위문금품(사회보장적수혜금)	260,000	220,000	40,000	증액
7	자활근로사업운영(p361) -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90,000	620,000	70,000	국시 구비 매칭
8	자활근로사업운영(p361)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2,878,703	2,510,510	368,193	국시 구비 매칭
9	지역자활센터운영(p361) -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6,402	332,947	73,455	국시 구비 매칭
1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p363)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9,244	77,312	△18,068	국시 구비 매칭
11	자산형성지원사업(p364)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1,306,310	598,406	707,904	국시 구비 매칭
12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p365) - 공무원 기본급 수당 등(공무직근로자보수)	34,446	18,290	16,156	증액

○ **검토 종합의견:** 생활보장과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인 비예산 사무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의료 사무를 집행하고 있음.

2022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30억 8,194만 2천원을 증액편성 제출하였고, 임차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지원도 수급자선정기준완화로 전 년도 대비 25.3% 증가한 187억 2,445만원을 편성 제출한 만큼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기금에서는 자활사업 기금 16억 9,241만 2천원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사업 기금 41억 9,917만 4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